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意匠拒絶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3. 7. 26)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덕주

關與法官: 大法院判事 정태균·윤일영·오성환

1. 審判請求人(上告人): 카티어 인터내셔널 비. 브이(네덜란드왕국 암스테르담 해렌그라츠 436)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審決: 特許廳 1981. 6. 29字, 1980年 抗告審判(絕) 第31號 審決

4. 主文: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 5. 理由

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1. 原審決은 그理由에서 本願意匠을 全體的으로 觀察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하고 돋보이는 것은 時計板의 주변에 부착시킨 8角形과 그 귀퉁이에 “⑪” 모양을 등거리로 配設하여 된 형상 모양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意匠의 要部가 引用意匠 (1)과 同一할 정도로 類似한 이상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계바늘 또는 용두 부분의 모양이 部分的으로 다소 다르다하여 別個의 意匠을 構成하는 獨創的 考案이라고 認定할 수 없다하여 意匠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한 原拒絶査定을 維持하고 있다.

2. 원래 意匠의 類似性 如否를 判斷함에는 兩意匠의 全體와 全體의 關係에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刺戟하고 주의를 활기시키는 結果에 따라 決定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公知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結合함으로써 새로운 裝飾的 效果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智能的 考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新規의 考案이라 하여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當院 1982. 5. 25宣告, 80후 112判決 參照)

記錄에 의하여 本願意匠과 引用意匠(1)을 對備하건  
례 本願意匠은 時計케이스가 全體의 으로 타원형에 가  
깝고 時計板의 주변에 갈색으로 된 8角形 모양의 장식  
판 모서리에 “⑪” 모양의 8個의 裝飾用스크류가 둘설  
되어 있음에 반하여 引用意匠은 시계케이스의 形像이  
全體의 으로 직사각형에 가깝고 그 表面 주위에 중첩된  
장식판도 노랑색으로 된 8각뿔대의 形象이며 그 모서

리에 “⑪”的 장식용 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本願意匠에 있어서는 용두를 지지 保護하기 위한  
保護帶가 上下로 設置되어 있고 용두의 形象도 7角形  
의 반원주형의 形象이며 용두의 주에 寶石을 고착시킨  
데 반하여 引用意匠은 위와 같은 보호대도 없거나  
용두의 형상자체도 이미 公知된 통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全體의 으로 對照觀察할 때 本願意匠은 引  
用意匠과는 一見하여 감독되는 意匠의 審美感과 趣味  
感이 相異할 뿐 아니라 本願意匠이 引用意匠에서 容易  
하게 創作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이고  
이와 같은 考案이 公知된 로마숫자와 시침등과 結合되  
었다 하여 智能의 以及 新規性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原審이 本願意匠이 引用意匠과 對等  
하며 創作性이나 新規性이 없다고 斷定하였음은 意  
匠의 新規性 및 創作性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論旨는 理由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原審決을 破棄 還送하기로 關與法官의 一  
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考—

#### 抗告審判

1980年 抗告審判(絕) 第31號

抗告審判請求人: 카티어 인터내셔널 비. 브이

被抗告審判請求人: 特許廳長

主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外)(國)(事)(件)

## 優先權證明書의 記載에 의해 誤記임이 明瞭하더라도 補正이 認定되지 않은 事例

(東京高裁 58. 3. 24 判決, 昭和56年(行ケ) 82號)

### 1. 事件概要

原告는擴散본팅프로세스라고 하는發明에 대해서  
파리條約에根據, 優先權主張을 해서 出願했으나 그  
明細書中의請求範圍등에 中間層合金의構成成分이  
臭素로 되어 있어 이를硼素로補正을 했으나 却下決定한다는審決을 받아서 그取消를 求하는訴를 提起했다.

다음의理由를 들어 上記의 補正是明細書의 要旨를  
變更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 ① 本件明細書를 그優先權證明書의記載와對照해  
보면 上記의臭素는硼素의單純한誤記임이明白하고
- ② 技術內容상으로도當業者가本件明細書를 읽으면  
上記의誤記를容易하게認識할수있다.

### 2. 判決要旨

判決은 下記의理由로原告의請求를棄却했다. 즉  
原告의 주장 ①에 대해서는 파리條約에根據한 優先權  
을主張하는特許出願에 있어서 提出되는 優先權證明  
書는 優先權의有無를判斷하기 위한 資料로서의效力  
을갖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日本에서의出願書  
類인明細書로서의效力를 갖거나 또는 이것을補充하는  
性質을 갖는 것이아님은明白하다. 그렇다면,原告의  
主張은出願人인原告가出願對象이라고主觀의  
으로認識하고 있던發明의內容을 그出願書에添  
附한明細書以外의 것을 가지고 確認한 바에 따라  
確認한 뒤에兩者間に差異가存在하는 경우에는이  
것을明細書의誤記로서補正을許諾해야한다고주  
장하는 것으로歸着된다. 그러나特許出願의對象이

되는發明은出願書에添附한明細書(圖面을包含)의  
記載에 의해特定되는것이며 이것을補正함으로해서  
當初出願의對象으로되어있던發明이別個의發明으로  
되어버리는것으로認定되는경우에는그補正是  
明細書의要旨를變更하는것으로許諾될수없다.

이점은出願人의主觀에 있어서는當初부터原出願  
明細書에記載된發明과는 다른發明에 대해서特許를  
얻으려는意思라는것이며 또는이것이明細書나圖面  
以外의優先權證明書등에 의해證明된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②에 대해서는原告가提出한鑑定書에 의해이비한  
種類에擴散본팅用中間合金層에添加하는融點低下  
劑로서臭素를採用하는 것은技術常識에反하는것으로  
認定된다고하더라도이것이正確하게는硼素라고  
해야할것의誤記임을本件明細書의記載에 의해  
一義적으로認識할수없다고밖에생각할수없다.

### 3. 論評

優先權主張을동반하는出願으로서日本에의出願書  
類(明細書, 圖面등)에誤記 또는誤譯이없을경우의  
우선권證明書에記載되어있는事項이라도日本에의  
當初出願書에記載한바가없는事項에대해補正을  
함은明細書의要旨를變更하는것으로한다는判斷은  
本判決中에서引用하는東京高裁昭和52年(行ケ46  
號), 同53年6月27日判決에判示되어있는것과같이  
判例上 및特許廳의實務上確立되어있는原則이라  
생각된다.